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6. 11 선고 2020가단38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고C

변론 종결2020. 5. 21.

판결 선고2020. 6. 11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3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들은 피고가 임의로 망 D이 사망 당시 거주하던 '포항시 E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'에

관한 소유 명의를 변경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상속 지분에 따른 보상금 각 3,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원고들·피고가 D(1985. 6. 29. 사망) · F의 자녀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, ①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일부라도 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(오히려 갑 제5호증의 1·2에 따르면,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D·F·피고 중 어느 누구의 명의도 나타나지 않는다),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,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가 없다.

판사최누림